품목분류

CASE 5 필름 셀 벽걸이 전시품

판정번호 N363784

물품 정보

용도

- 영화 수집품을 액자 형태로 구성한 물품으로 벽에 걸어 전시·감상

구성

- 프레임, 보드 및 아크릴 커버
- 영화 「대부」 포스터 이미지
- 실제 극장 상영 포지티브 필름에서 잘라낸 12개의 35mm 필름 셀

쟁점 HS

제3706호 영화용 필름

제4911호 그 밖의 인쇄물

CBP 판단

- **영화 포스터와** 극장 상영용 필름의 일부를 잘라낸 **필름 셀**을 프레임·커버 등과 결합하여 제작한 벽걸이 전시품으로, **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복합물품에 해당**
- 신청인은 영화 포스터 이미지를 기준으로 제4911호의 인쇄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
- CBP는 필름 셀의 **수량·가치 및 영화 수집품으로서 전시물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**하여, 포스터 이미지가 아닌 **필름 셀**이 쟁점물품에 **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**

실제 영화 필름의 일부인 필름 셀이 포스터 보다 전시·수집품으로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

미국 HS-CODE 결정

3706.10

영화용 필름